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2. 11. 15.  
제출자 : 달성군청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 확대 및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에 헌신·공헌한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군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지원사업 확대

- 참전 유공자 특별 위로금 지급 : 매년 6월 1일 기준 연 20만원 지급

### 나. 지원기준 완화

- 연령 기준 삭제 : 만 65세 이상 규정 삭제
- 거주 기준 삭제 : 달성군에 1년 이상 주소 규정 삭제
- ⇒ 참전 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
-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【붙임 1】 참조
- (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4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2012. 10. 25 ~ 2012. 11. 14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참전유공자에게 연 20만원의 특별 위로금 지급

제4조제1항 중 “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”를 “참전유공자로서”로, “1년 이상 주소를 두고”를 “주소를 두고, 거주하고”로 한다.

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 추계서

#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### 2.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내역

- 지원사업 확대

· 참전 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 : +770명

- 지원기준 완화

· 참전유공자 연령, 거주 기준 삭제 : +120명

### 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총 계	197,200	
특별위로금	154,000	■ 200천원 × 770명 × 1회 = 154,000천원
연령, 거주 기준 삭제	43,200	■ 30천원 × 120명 × 12월 = 43,200천원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참전유공자에게 연 20만원의 특별 위로금 지급</u></p>
<p>제4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대상자는 <u>만 65 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</u>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<u>1년 이상 주소를 두고</u> 있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대상자) ① ----- <u>참전</u>  <u>유공자로서</u>-----  <u>주소를 두고, 거주하고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은 매년 6 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

**참고 1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(참전명예수당)**
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당지급대상자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3.5.29, 2006.3.3, 2007.1.3, 2008.3.28>

② 삭제 <2005.3.31>

③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

<개정 2003.5.29, 2005.3.31>

④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<신설 2003.5.29>

⑤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19조 본문,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·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<개정 2007.1.3>

⑥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·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****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**

제7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 액은 월 12만원으로 한다.

**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지원대상)**

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1.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
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